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7. 8. 17.>

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

※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5일

출원인	성 명	주민등록번호
	주 소	전 화
출원자격	※ 본인 해당 자격에 ∨ 표시를 한 후, 필요한 경우 표시과목을 기재하세요. ☐ 중등학교 2급 정교사 (표시과목 :) ☐ 부전공 (표시과목 :) ☐ 전문상담교사(2급) ☐ 영양교사(2급)	

자격요건	출신학교명	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	전공	[V] 졸업 [ ] 수료
	연수명			
	경력			

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출원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출원인) (서명 또는 인)

국민대학교 총장 귀하

첨부서류	○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1. 간호사면허증사본(보건교사에 한정함) 2. 영양사면허증사본(영양교사에 한정함) 3. 국가기술자격증사본(해당 교과에 한정함)	수수료 없 음
	○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 1.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(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에 한정함) 2. 경력증명서(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에 한정함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인 간호사면허증사본, 영양사면허증사본, 국가기술자격증사본에 대하여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동의함 [ ] 동의하지 않음 [ ]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